

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- ▷ 회의일시: 2026년 06월 26일(금)
- ▷ 회의장소: (서면회의)
- ▷ 회의안건: 대학원 학칙 개정

가. 위원정족수: 12명(개회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심의/의결: 출석위원 과반수)

나. 참석의원: 송●령, 방●송, 안●현, 홍●빈, 차●원, 김●윤, 정●희 (총 8명)

다. 결석의원: 현●진, 정●조, 엄●일, 김●복 (총 4명)

라. 회의내용: 방학 중 해외출타 위원 및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대학원 학칙을 개정해야함에 따라, 위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,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로 함.

방●송 의장: 방학 중에 해외출타 및 원거리 거주(전주 등)의 문제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, 서면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대학평의원회의 안건은 대학원 학칙으로 첨부자료와 같이 중대한 개정사항은 아니지만, 규정의 현행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. 일단, 첨부자료를 살표본 후에 서면의견서에 가/부와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.

간사님께서서는 평의원님들께 회의소집(서면회의)을 통보하고, 서면의견서를 받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.

이●근 간사: 네. 알겠습니다.

안건 1) 「2-0-4 대학원 학칙」 일부개정

▶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

2026년 06월 26일

작성자 : 대학평의원회 간사 이●근(인)

대학평의원회 의장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송●령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안●현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홍●빈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차●원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김●윤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정●희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손●슬 의원

하단 서면의견서 참조

현●진 의원

불참

정●조 의원

불참

임●열 의원

불참

김●복 의원

불참

규정 입안서

1. 규정류 명칭	2. 규정류 구분
대학원 학칙	학칙
3. 입안(운용)처	4. 입안구분
대학원교학팀	개정
5. 관련 규정류	6. 참고자료(첨부)
7. 제·개정, 폐지 목적 및 취지	
<p>※ 교육부고시 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」(교육부고시 제2025-40호) 반영</p> <p>※ 일반대학원 석·박사통합과정 계약학과 운영 근거 포함</p>	
8. 제·개정, 폐지 주요골자(주요내용, 시행시기, 경과조치 등)	
<p>제4조(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) 별표1 대학원 입학정원 표 추가(계약학과) <개정 2026.00.00></p> <p>제4조의 2 <삭제></p> <p>제5조 3,4<개정 2026.00.00>, 5. 신설 <2026.00.00></p> <p>제16조 ②<개정 2026.00.00></p> <p>제43조 ② <삭제></p> <p>제43조의 2 ②, ③ <삭제></p> <p>제44조 ② <삭제></p> <p>제44조의 2 <삭제></p> <p>부칙 <신설 2026.00.00></p> <p>[별표 1] 대학원 입학정원표 추가</p> <p>[별표 2] 대학원 학위수여 증별 추가</p>	
9. 심의과정의 착안사항(입안처 의견 등)	
<p>1. 2026년 9월 모집부터 일반대학원 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계약학과 운영 검토중 (산학협력단 주체)</p> <p>2.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역할 모두 대학원 위원회로 통일하여 운영</p>	

신구문대비표

■ 규정명 : 대학원 학칙

조 문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4조	<p>제4조(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)</p> <p>① 각 대학원에 두는 입학정원(계약학과포함)은 [별표1] 과 같다.<신설 2009.01.06.></p> <p><개정 2012.09.01><개정 2014.12.01></p> <p><개정 2016.2.25.><개정 2016.12.06.></p> <p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11.26.></p> <p><개정 2021.11.17.><개정 2024.01.25.></p> <p><개정 2025.12.09></p>	<p>제4조(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)</p> <p>① 각 대학원에 두는 입학정원(계약학과포함)은 [별표1] 과 같다.<신설 2009.01.06.></p> <p><개정 2012.09.01><개정 2014.12.01></p> <p><개정 2016.2.25.><개정 2016.12.06.></p> <p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11.26.></p> <p><개정 2021.11.17.><개정 2024.01.25.></p> <p><개정 2025.12.09><개정 2026.00.00></p>	<p>별표1 대학원 입학정원표 추가 (계약학과신설)</p>
제4조의 2	<p>제4조의 2(전공 신설 기준 및 절차)</p> <p>① 대학원에 전공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<신설 2025.12.09></p> <p>1. 전임교원 확보</p> <p>가.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: 전임교원 3명 이상</p> <p>나.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: 전임교원 5명 이상 (박사학위)</p> <p>다.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: 전임교원 7명 이상 (박사학위)</p> <p>2. 전임교원은 1인당 1개 전공에 한하여 교원확보 인원으로 선정한다.</p> <p>3. 교원은 최근 5년 이내(교육부 고시 기준) 논문 또는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, 실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을 신설한다.<신설 2025.12.09></p>	<p>제4조의 2(전공 신설 기준 및 절차)</p> <p>① <좌 동></p> <p>2. <삭제 2026.00.00></p> <p>3. <좌 동></p>	<p>교원확보 인원 선정 조항 삭제</p>

<p>제5조(수업연한)</p> <p>①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03.02.><개정 2007.09.17.> <개정 2024.11.19></p> <p>3. 일반대학원 석사학위통합과정 : 5년 <개정 2025.12.09><개정 2026.00.00></p> <p>4. 일반대학원 박사학위협동과정 : 3년 <개정 2026.00.00></p> <p>5.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: 2년 <신설 2026.00.00></p>	<p>제5조(수업연한)</p> <p>① <좌 등></p> <p>3. 일반대학원 석사학위통합과정 : 5년 <개정 2025.12.09><개정 2026.00.00></p> <p>4. 일반대학원 박사학위협동과정 : 3년 <개정 2026.00.00></p> <p>5.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: 2년 <신설 2026.00.00></p>	<p>계약학과 신설 (석박사통합과정 운영)</p>
<p>제16조(등록)</p> <p>① 학생은 등록기간 내 소정의 납입금 남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각 대학원의 학생은 4학기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제5조의 수업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03.02.> <개정 2007.09.17.></p> <p>③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과정 기술부령 "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"에 의한다.</p>	<p>제16조(등록)</p> <p>①<좌 등></p> <p>② 각 대학원의 학생은 과정별 수업연한에 따른 학기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제5조의 수업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03.02.> <개정 2007.09.17.> <개정 2026.00.00.></p> <p>③ <좌 등></p>	<p>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 수업연한에 따라 개정</p>
<p>제43조(위원회)</p> <p>① 전체 대학원의 학사편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2.03.02></p> <p>②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운영 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2.03.02></p>	<p>제43조(위원회) ① 전체 대학원의 학사편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 둔다.<개정 2012.03.02.></p> <p>② <개정 2012.03.02.><삭제 2026.00.00></p>	<p>대학원 위원회로 운영</p>
<p>제43조의2(구성 및 임기)</p> <p>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, 교학지원처장,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과 교학지원처장 중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9.25></p> <p>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조선신설 2012.03.02></p>	<p>제43조의2(구성 및 임기)</p> <p>① <좌 등></p> <p>② <삭 제 2026.00.00></p> <p>③ <조선신설 2012.03.02.><삭제 2026.00.00></p>	<p>대학원 위원회로 운영</p>

<p>제44조(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)</p> <p>① 1.~9. <생략></p> <p>② 제1항 제1호, 제3호에서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. 다만,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할 수 있다.<항신설 2012.03.02></p>	<p>제44조(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)</p> <p>① <좌 등></p> <p>② <항신설 2012.03.02.><삭제 2026.00.00></p>	<p>제44조</p>	<p>대학원 위원회로 운영</p>
<p>제44조의2(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)</p> <p>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조선신설 2012.03.02></p> <p>1. 제44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p> <p>2. 기타 각 대학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	<p>제44조의2(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)</p> <p>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조선신설 2012.03.02></p> <p>1. 제44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p> <p>2. 기타 각 대학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	<p>제44조의2</p>	<p>대학원 위원회로 운영</p>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
- 카카오톡
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평의원명 : 방 ● 송 (인)

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 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평의원명 : 송 ● 령

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평의원명 : 안●현  (인)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6.

평의원명 : 홍 ● 빈  (인)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평의원명 : 차●원

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평의원명 : 김 ● 윤 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평의원명 : 손●슬 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대학평의원회 서면 의견서

1. 회의명: 2026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
2. 회의일시: 2026. 6. 26.(금)
3. 회의장소: 서면회의
4. 심의 및 의결 안건

안건구분	심의 및 의결 안건
안건1	『2-0-4 대학원 학칙』 일부개정

5. 평의원 의견사항


안건구분	가/부	의견란
안건1	가	의견 없음

6. 의견제출 마감일 및 제출방법

1) 의견제출 마감일: 2026.6.29.(월)까지

※ 안건에 대한 가/부를 기입(의견없으면 “의견없음”)하시고, 하단 서명란에 서명

2) 제출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.

- 이메일: @office.yewon.ac.kr
- 카카오톡
- 방문제출: 예원관3층(335호) 기획조정처

2026. 6. 29.

정●희 

평의원명 : 정●희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